

〈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(안)〉

제1항(가사) :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(세탁, 청소 등)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,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만 한다.

제2항(악기) :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의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.

제3항(아동소음 등) : 아이들이 뛰는 행위, 계단에서 뛰는 행위,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광 닫는 것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.

제4항(가전제품) : TV와 라디오 소음발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.

제5항(운동기구) : 골프 연습기, 헬스기구 등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.

제6항(물 사용) :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사용을 자제한다.

제7항(애완동물) : 애완동물 관련 소음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.

제8항(발자국소리) : 발자국 소리 등이 울릴 경우 슬리퍼, 소음방지용 전용양말 및 매트를 설치한다.

제9항(인사하기) : 주민 간에 먼저 인사하기 운동 캠페인을 상시 실시한다.

제10항(기 타) : 상기 1~9항의 준수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을 한다.

※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주민 토론을 통해 예방 수칙의 구체적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